

제27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
제1차 회의 2021. 4. 23.(금)

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

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남양주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자립복지 증진을 위한 창업기반 조성

3. 주요내용

가. 청년창업센터의 설치목적 및 기능(안 제1조~제4조)

- 1) 공식명칭 :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
- 2) 센터별칭 : 이석영신흥상회
- 3) 주요사무 : 공간제공 및 입주자 관리, 창업자문 등

나. 청년창업센터 입주대상, 입주자 지원사항·의무사항(안 제5조~제9조)

- 1) 입주대상 :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(예비)청년창업자
- 2) 입주절차 : 입주 시기 도래 시 공개모집
- 3) 지원사무 : 공간지원, 창업지원사업 정보제공, 창업자문 등

다. 청년창업센터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의 위탁규정(안 제10조~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다. 관련부서 : 미래인재과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창업자금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공간의 제공과 컨설팅 지원하고자 설치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.

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정의에서는 청년창업자의 범위를 만 39세 이하로 정하였고, 안 제4조와 제5조는 창업센터의 업무와 입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, 안 제7조는 입주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,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·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우리시 최초의 청년창업센터는 청년들에게 창업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저렴한 창업 판매 공간을 제공하여 장래에 꿈을 실현하고 미래에 자립에 토대를 마련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참고로 청년창업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매년 평균 5억8천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남양주도시공사가 수탁 받아 운영 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「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안 제4조(기능), 제7조(입주자 지원 등), 제9조(사용료 등), 제10조(창업센터 운영의 위탁 등)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시설 및 사업운영비 : 창업보육 등 사업운영비 및 시설관리 위탁비
 - 남양주도시공사의 위·수탁대행사업비(인건비, 시설비 등) 지급
 -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(예비)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공간 제공 및 상시 창업컨설팅(자문)·창업교육 지원에 따른 사업운영(창업보육)비용 발생
- 운영수입 : 청년창업센터 내 개별스토어 관리비(전기·가스·수도요금) 실비 청구에 따른 사용료 징수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후 5년간 인건비 인상률 3%반영(최근 3개년 인건비 평균인상률)
- 경비 및 시설비 인상률 1.5%반영(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)
- 창업자문 전문컨설팅 연간 250회(회당 평균 자문수당 200천원)

나. 수입

- 연도별 수입금액

(단위: 천원)

구분	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계	191,667	37,200	37,758	38,325	38,900	39,484
관리비	191,667	37,200	37,758	38,325	38,900	39,484

※ 관리비 : 31개 스토어 입주 기준 / 월 평균 10만원(전기·가스·수도요금)×12개월

다. 지출

- 사업운영비 : 사무관리비(자문·심사수당, 홍보비 등), 행사운영비
-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(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) : 인건비(일반직 2명), 시설비(수선유지비, 공공운영비, 소규모 용역비 등)

※ 남양주도시공사 시설관리위수탁협약 기준

○ 연도별 지출 금액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계	2,849,437	550,000	559,750	569,692	579,829	590,166
사업운영비	772,841	150,000	152,250	154,534	156,852	159,205
대행사업비	2,076,596	400,000	407,500	415,158	422,977	430,961

라. **재원조달방안 : 자체수입 (2021년 본예산 반영)**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문화교육국 미래인재과장 강 호 진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: 천원)

구 분	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계
세 입							
세 출		550,000	559,750	569,692	579,829	590,166	2,849,437
		550,000	559,750	569,692	579,829	590,166	2,849,437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37,200	37,758	38,325	38,900	39,484	191,667
	시 비						
	세외수입	37,200	37,758	38,325	38,900	39,484	191,667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**제5조의3(창업촉진사업)**

법 제4조의2제1항제4호에서 "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[개정 2014.12.3]

1.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
2. 창업 관련 정보 제공
3. 창업 공간 지원
4. 시제품 제작 지원
5. 창업자의 판로 지원
6. 창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

[본조신설 2014.1.14]

제5조의4(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)

법 제4조의2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"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5.5.1]